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9
----------	-----

2023. 4. 28.(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종필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3년 4월 5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4월 6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4월 21일

-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 · 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종필 의원)

가. 제안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신청 등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도지사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김홍식 수석전문위원)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법 제60조의2는 화물자동차 소유자나 사용자,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운송주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절차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사무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시·군에 위임하였으나, 도 내 시·군에서 실질적인 제도의 운영은 저조한 실정임.
- 본 조례안은 도 내 시·군의 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일률적으로 규율하여 실질적인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의 법 위반행위 신고를 독려하여 건전한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참 고

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미제정 : 전북, 경북, 제주)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정일	14.1.9	14.9.17	14.3.3	15.9.30	15.11.1	16.12.30	17.9.28	17.9.29
시·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정일	12.6.29	13.8.2	17.2.28	미제정	17.12.14	미제정	21.9.30	미제정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본 조례안은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는 법 위반행위를 한 자를 도지사·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함.
 - 안 제3조는 연간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위반행위별로 10만원, 15만원, 20만원 및 회수금액의 10%로 차등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함.
 - 안 제4조는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원칙적으로 신고인 등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등 포상금 지급방법을 규정함.

- 안 제11조는 본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그 밖의 조문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3. 4. 12.~4. 18.)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문, 별표, 2개 별지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에서 위임된 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본 조례안 이전에도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에 따라 시·군에 위임된 사무였으나, 시·군에서 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적극 시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본 조례안 제정 이후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4. 검토의견

○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일률적으로 규율하여 실질적인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을 충실하게 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례제정의 필요성,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이 인정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이미 법령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에 따라 도 내 시·군이 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할 수 있었으나 시행되지 않았었던 점을 고려하면, 본 조례안 제정 이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에 대하여 조례제정 취지를 이해시키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협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2. 법 제11조제4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3. 법 제11조제20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4. 법 제11조의2제3항, 법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법 제12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법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

한 운수종사자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7.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②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된 행위가 위법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고 또는 고발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고발된 행위가 재결 또는 판결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한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4조(위반행위의 신고)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에게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 외에는 신고할 수 없다.

③ 도지사는 신고인의 방문, 우편, 전자메일, 게시판 등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 방법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경우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제

1항에 따라 법 제60조의2에 따른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포상금의 신청)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이 포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신고인등이 신고(제4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위반행위 건별로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신고인등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신고인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인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고인등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의 신고인등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시 신고인등이 지정한 대표 신고인등에게 지급한다.

⑤ 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해당 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영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도지사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인등의 보호) 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등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4조부터 제9조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포상금
1.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100,000원
2. 법 제11조제4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100,000원
3. 법 제11조제20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100,000원
4. 법 제11조의2제3항, 법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150,000원
5. 법 제12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법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	100,000원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회수금액의 10퍼센트 (다만, 200,000원을 한도로 하고, 100원 이하는 지급하지 않음)
7.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00,000원

[별지 제1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 다수가 공동 으로 신고하는 경우, 별지에 공동신고인을 기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공동신고 여부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신고사항	위반사항 확인일시	년 월 일 시 분		
	피신고인	성명(업체명)		
		차량번호		
		주소 또는 위반장 소		
	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신고내용의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별지 제2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 다수가 공동으로 신고한 사건인 경우 대표신청인 1명을 선정하여 표시, 대표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공동신고인은 별지에 기재	성명		생년월일		[] 대표 신청인 여부 ※ 대표 신청인인 경우 √표시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신고사항	피신고인				
	신고내용				
계좌정보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계좌입금 외 방법 수령 여부	[]동의 []부동의 ※ 포상금은 신고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함. 다만 신고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음.				

「충청북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신고포상금 선정 및 지급은 시장·군수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도의 재정을 수반하지 않으며, 우리 도 위반행위신고 관련 신고·포상의 실적이 없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